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4. 14.

행정재경위원회

|          |     |
|----------|-----|
| 의안<br>번호 | 579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강남구청장(세무1과)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2. 4. 14.)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은승일)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는 “부칙”에서 전체 조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적용 범위 해석에 있어 납세자가 좀 더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폐지하고,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 방식으로 구세 감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 또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선별진료소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 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 일괄 규정방식에서 조례 조문별 유효기간 규정방 식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세정을 운영 하고자 함.
- 선별 진료소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1.12.28.)으로 조례로 위임한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상의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함.

(전자송달, 자동이체 150원 →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 → 600원)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별첨
- 입법예고(2022. 3. 4. ~ 2022.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특기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sup>1)</sup>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2019.11.8.> 제2조(유효기간)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라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실제 이 조례는 법적효력이 실효된 것임.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조례는 새로 제정해야 하는 바 현재 조례 내용을 토대로 하고 2021.12.28.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바 현재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음. 다만, 누락된 감면대상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현재 감면내역이 없으나 향후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음.

<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 내역>

(단위: 원)

| 근거조례<br>(현행) | 비과세감면 내역  | 주세목           | 2020 비과세감면 |           | 2021 비과세감면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제3조          |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 재산세<br>토지     |            |           | 1          | 103,938     |
| 제7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따른 감면                    | 재산세<br>토지     |            | 법령사항      | 1,715      | 237,966,273 |
| 제8조          | (재산세 100% 서울) 시장현대화 및 전 통시장, 시장정비 사업 감면               | 재산세<br>건축물    | 2          | 420,300   | 2          | 443,500     |
| 제8조의2        | (등록면허세 정액 40,200원 기초공통)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산출세액 112,500원 미만) | 등록면허<br>세(등록) | 4          | 723,000   | 2          | 433,800     |
| 제10조         | 법위임(정기분세목 세액공제 기초공통) 전자송달 신청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등록면허<br>세(면허) | 7,432      | 1,114,800 | 10,426     | 1,563,900   |
| 제10조         | 법위임(정기분세목 세액공제 기초공통) 계좌 자동이체 신청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등록면허<br>세(면허) | 749        | 112,350   | 949        | 142,350     |
| 제10조         | 법위임(정기분세목 세액공제 기초공통)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등록면허<br>세(면허) | 60         | 9,000     | 74         | 11,100      |
| 제10조         | 법위임(정기분세목 세액공제 기초공통)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등록면허<br>세(면허) | 6,722      | 3,360,300 | 7,352      | 3,676,000   |
|              | 총계  |               | 14,969     | 5,739,750 | 20,521     | 244,340,861 |

- 그 밖에 조문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변경 없이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sup>2)</sup>에서 해당 자치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의 규정은 현행 조례 내용대로 재기재한 것이고 현행 제2조(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제1호가 2021.12.28.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되었던 것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삭제한 것임.

| 개정 전  | 개정 후   |
|---|--|
| <p><b>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b><br/>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u></p> <p>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u>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u></p> <p>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p> <p>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p> | <p><b>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b><br/>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u></p> <p>1.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u>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u></p> <p>2. 삭제 &lt;2021.12.28.&gt;</p> |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부터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까지의 규정은 현행 조례(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내용대로 규정하고 다만, 3년 이내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 조항별로 재산세 면제시한을 규정한 것임.

- 안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신설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sup>3)</sup>가 2021.6.8. 신설되어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병원의 선별진료소설치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2021.12.28. 개정되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500원⇒250원~800원 범위로 변경되어 현행 150원을 250원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의 경우 300원~1천원⇒500원~1천600원 범위로 변경되어 500원을 6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다만, 현재 서울시가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어 세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액공제액 및 마일리지를 합하면 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68.7퍼센트에 근접하고 있는 바 적절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개정 전  | 개정 후   |
|---|--|
| <p>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u>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u>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u></p> | <p>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u>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u>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u></p> |

- 같은 조 제2항 단서조항의 삭제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sup>4)</sup>의 규정에 따라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서울시 전자고지 신청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

| 신청구분                | 세액공제액 | 마일리지 적립 |         | 합계                           | 공제범위(법)   |
|---------------------|-------|---------|---------|------------------------------|-----------|
|                     |       |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                              |           |
| 전자고지 납부신청           | 250   | 350     | 850     | 30만원미만: 600<br>30만원이상: 1,100 | 250~800   |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부신청 | 250   | 0       | 0       | 250                          | 250~800   |
| 전자고지&자동이체           | 600   | 500     |         | 1,100                        | 500~1,600 |

- 안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부터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까지의 규정은 현행 조례(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내용대로 규정하고 다만,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을 ‘법 제177조’ 로 개정하려는 것은 이 조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정되고 명시적으로 감면 제외대상을 적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법  | 지방세제한특례법   |
|---|--|
| <p>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p> | <p>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b>별장</b>: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p> <p>2. <b>골프장</b>: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p> |

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안 부칙 중 제2조(종전 조례의 폐지)의 규정은 현행 조례가 형체는 남아 있으나 법적효력이 실효되어 명시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에서는 <예시><sup>5)</sup>와 같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여 구별하는 것이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5) <예시>

#####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였어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사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        |
|--------|
| 관련의안번호 |
| 제579호  |

제안일자 : 2022.4.14.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부칙을 추가 시설하여 법적 안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부칙 제3조 중 일부를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분리하여 신설(안 부칙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폐지) 종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였어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제1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를 말한다)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 법 제184조를 적용한다.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서울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인 경우
2.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감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폐지) 종전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였어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